

"아껴쓰는 수돗물 웃음피는 우리이웃"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우편번호 120-0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1 / ☎ (02) 390-7321-4 / 전송 363-5258
처리부서 : 과장(서대문별관 3층) 부장 : 박희수 과장 : 김석영 담당자 : 박진용

문서번호 : 과장 11250-2988

시행일자 : 1998. 11.

(경유) (제 1 단)

받음 : 내부 결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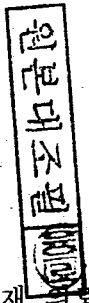
취급		시 장
보존		결재 1998. 11. 13 본부장
본부장	전 결	박진용
차 장	김홍익	
부 장	박희수	법무담당관 심사필
과장	김석영	기안 박진용

No. 995

제목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자 합니다.

첨부 : 공고문안 1부. 끝.



(제 2 단)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홍보담당관

제 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시보게재

1.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고문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324



공 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1998-60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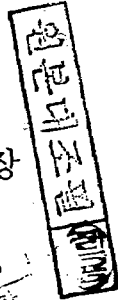
인	심사	1998. 11. 13	제 62호
담당자	법제심사	상수도	부담담판
이승복	이희환	박동봉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이 입법예고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과장과(전화: 3907-324)로 문의바랍니다.

1998. 11.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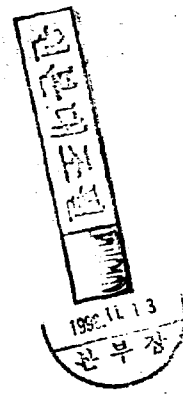
가. 개정취지

-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해 해마다 많은 결손이 발생하여 상수도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경영을 개선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투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평균 14.9% 인상하고
- 수도요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행정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급수업종 및 누진요율 단계를 축소함.
- 가정용 월 10m³이하 사용하는 세대는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요금(190원/m³)유지

나. 주요내용

① 구경별기본요금 조정 : 26.6% 인상

구 경(밀리미터)	현 행(원)	조정안(원)
13	690	870
20	1,860	2,400
25	3,300	4,200
32	5,970	7,600
40	10,100	12,900
50	16,100	20,500
65	24,700	31,300
75	33,300	42,200
100	57,000	72,000
125	90,500	115,000
150	124,000	157,000
200	176,000	223,000
250	238,000	302,000
300	296,000	375,000
350	372,000	471,000
400이상	405,000	513,000



② 사용요금 조정 : 평균 13.2% 인상

- 급수업종 축소 : 6개업종 → 4개업종

- | | | |
|---------------|---|--------|
| ○ 가 정 용 | → | 가 정 용 |
| ○ 욕 탕 용 1 종 | → | 대중목욕탕용 |
| ○ 영업용1종+공공용 | → | 업 무 용 |
| ○ 영업용2종+욕탕용2종 | → | 영 업 용 |

- 누진요금단계 : 5~6개 단계 → 3~5개 단계로 축소

※ 영업용은 다량급수처 절수유도를 위해 월 300m²초과 사용단계를 세분하여 신설

- 요율조정

현행			조정안		
업종	구분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단가(원)	업종	구분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단가(원)
가정용	1~10	190	가정용	0 ~ 30이하	270
	11~20	240		30초과~40이하	460
	21~30	270		40초과~50이하	540
	31~40	460		50 초과	770
	41~50	540			
	51이상	770			
욕탕용1종	1~500	180	대중목욕탕용	0 ~ 500이하	230
	501~1000	220		500초과~2,000이하	270
	1001~2000	260		2,000 초과	360
	2001~3000	300			
	3001이상	350			
영업용1종	1~20	240	업무용	0~50이하	400
	21~50	400		50초과~300이하	520
	51~100	500		300초과	590
	101~300	520			
	301이상	590			
공공용	1~20	240			
	21~50	380			
	51~100	430			
	101~300	480			
	301이상	540			
영업용2종	1~30	500	영업용	0~100이하	690
	31~50	570		100초과~200이하	830
	51~100	690		200초과~300이하	960
	101~200	830		300초과~1,000이하	1,020
	201~300	960		1,000초과~2,000이하	1,170
	301이상	1,020	2,000초과~3,000이하	1,210	
욕탕용2종	1~200	830		3,000초과	1,240
	201~500	960			
	501~1000	1,070			
	1001~2000	1,170			
	2001~3000	1,210			
	3001이상	1,240			

※ 단, 가정용 월 10㎡이하 사용세대는 1㎡당 19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907-3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다. 기타 참고사항(연락전화번호 등) 등

